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2251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종우, 윤조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나정, 김경애, 오새론

변 론 종 결 2020. 4. 2.

판 결 선 고 2020. 5.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44,974,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 1. 14.부터 2012. 5. 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였다.

2) 피고와 피고의 배우자인 D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인천 남동구 E 대 326.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F 대 326.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경기 양평군 G 대 66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H 대 679㎡(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C에 증여하였다가 합의해제한 자들이다.

나. 금융위원회의 C에 대한 경영개선요구조치

금융위원회는 2011. 9. 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47조에 따라 C에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C의 2011. 6. 말경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비아이에스(BIS) 비율, 이하 '비아이에스 비율'이라 한다}이 2.39%에 불과하여 경영개선요구 대상에 해당하므로, 경영개선요구사항{① 비아이에스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본 확충, ② 고금리 수신 제한, ③ 신규 피에프(PF)대출 및 거액여신 취급 금지, ④ 이익배당의 제한}을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행하고 2011. 9. 30.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 및 합의해제

1) 원고는 C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경영개선요구조치를 받자 C의 비아이에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D가 C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고 C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9. 28. 원고에게 2011. 9.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에 2011. 9.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D는 2011. 9. 28. 원고에게 2011.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C에 2011. 9.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C은 2011. 9. 28.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6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44,974,940원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5)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11. 15. 같은 날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고,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12. 13. 2011. 12. 12.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다.

라. C에 대한 파산선고

C은 2012. 5. 6.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결정, 경영개선명령, 임원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처분을 통보받으면서 2012. 5. 6.부터 2012. 11. 5.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고, 결국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2011. 9. 28. 이 사건 제3, 4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44,974,940원을 피고 대신 I에 변제하였다. 비록 이 사건 제3, 4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C에 대하여 부당이득 등으로 위 444,974,94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1) 피고는 C의 비아이에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면서 C이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주면 향후 C에 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피고 및 D가 C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행위와 C이 피고를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C이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한 행위는 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와는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C은 피고에게 그 변제금 상당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3) 가사 C과 피고,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C이 피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위하여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여계약은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C과 피고, D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및 D에게 반환하였음에도 C으로 하여금 피고의 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바, C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반환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C은 피고에게 그 변제금 상당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2011. 11.경부터 C의 부실 여부를 관리, 감독하였던 금융감독원의 관리인은 C에 대한 실사 중 C이 피고의 채무 444,974,940원을 대위변제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2012. 1. 20.경 원고에게 이를 지적하면서 해결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자신 명의의 C 계좌(J)에서 444,974,940원을 출금하여 C 명의의 계좌(K)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다. 즉, C은 피고의 I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C은 이를 원고의 계좌에서 회수함에 따라, 피고는 C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444,974,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주장하는 위 444,974,940원이 원고의 재산이어야 하는바, 먼저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인해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켰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갑 제4, 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11. 12. 30. 원고 명의의 C 보통예금 계좌(L)에 9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적요란에는 ‘M 타점1:

9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입금전표에는 9억 원이 전액수표로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2011. 12. 31. 위 9억 원이 원고 명의의 C 별단예금 계좌(J)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 ③ 2012. 1. 20. 위 별단예금 계좌에서 기존에 집행된 가지급금 지출액 444,974,940원이 상환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9억 원의 입금명의자 M는 C의 직원으로 보이고, 당시 원고의 C 내에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9억 원을 출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출처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위 9억 원에 대하여 2020. 1. 7.자 준비서면에서 ‘2011. 12.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위 9억 원의 정확한 출처, 차용 경위, 수표거래내역 및 위 9억 원이 원고 명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별단예금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중 444,974,940원이 가지급금 상환으로 처리된 경위 등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는 점, ③ C은 2011. 12. 30.경 피고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그 차용일, 금액에 비추어 2011. 12. 30. 원고 명의의 C 계좌(L)로 입금된 9억 원은 C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별단예금 계좌에서 444,974,940원이 상환처리된 것이 원고 재산의 출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재은, 판사 황민웅, 판사 장윤실